

'06/'07년 AI 긴급방역 후속조치 추진계획



01. AI 발생지 방역조치 및 농가 지원대책 마무리

① AI 발생지역 방역조치 마무리

- 전북(익산·김제), 충남(아산·천안), 경기(안성)에서 총 7건 발생
 - 각 발생지별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 가금류 등(총 460농가 2,800천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확산 차단
- 익산·김제·아산·안성의 AI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으며, 마지막 발생지인 천안지역의 방역조치도 절차에 따라 해제 예정(5월초)

- 전국적 AI 방역조치 해제 발표(보도자료)와 함께 NSC 매뉴얼에 따라 NSC와 협의하여 AI “경계단계” 정보 해제

② 처분보상금 등 농가 지원대책 마무리

- 살처분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대책 비는 계획대비 70% 집행(699억원 중 482억원 집행)
 - 살처분보상금은 최근 발생지인 안성·천안지역만 평가 지연으로 50% 가지급한 상태이며, 나머지 지역은 지급 완료
- 생계·소득안정자금 등은 발생지역별 순차적으로 지

【AI 발생지별 발생상황 요약】

구분	발생일자	지역	축종	주변 추가상황
1차	2006. 11. 22	익산	육용종계	
2차	2006. 11. 27	익산	육용종계	위험지역내 육용종계 1농가 양성 추가확인
3차	2006. 12. 10	김제	메추리	
4차	2006. 12. 11	아산	종오리	오염지역내 종오리 1농가 양성 추가확인
5차	2007. 1. 19	천안	신란계	천안(풍세천), 차원(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 바이러스 2점 검출
6차	2007. 2. 9	안성	신란계	
7차	2007. 3. 6	천안	종오리	위험지역내 오리 4농가 양성 추가확인 경계지역내 오리 1농가 H7N3형 저병원성 검출 천안(병천천) 야생조류 2마리 H5형 항체 검출

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중

※ 최근 안성·천안지역의 장기간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로 인해 출하시기를 놓친 육용오리를 이동제한 해제 후 수매(3.30)기로 하였으나 신청이 없음

02 AI 청정국 지위 회복절차 추진

① AI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 오리에 대한 전국적 일제검사 실시

- 가축방역협의회(3.22)의 권고를 받아들여 AI 청정성 확인을 위해 전국 수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사육오리 일제검사 실시
- 4~5월(1개월간) 오리농가(9,000농가) 중 시·도별 규모가 큰 270농가를 선정·정밀검사(소요예산 64백만원, 농특회계 기축방역사업비)
 - 시·도가 방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농장별 시료를 채취하여 수의과대학에 정밀검사(항원·항체검사) 의뢰
 - 항원·항체 양성 반응시 검역원에서 확인검사 실시

② 철새 등 야생조류 포획 검사

- 환경부와 공동으로 야생조류의 AI 감염실태 조사를 실

시중

- '07년 700마리(4월 30일까지 500마리)를 직접 포획·검사 계획
- ※ '07년 4월 3일 현재 331마리 포획·검사 결과 천안 지역(병천천)에서 포획한 북방 철새 2마리(흰뺨검둥오리)에서 H5형 항체 검출
- 4.30일까지 실시한 포획·검사 결과 분석을 5월 중에 완료
 - 5~6월 여름철새, 9~11월 겨울철새 도래시기에 나머지 물량 실시

③ '06/'07년 AI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 마무리

- 역학조사결과 중간보고(4월 20일) (장관지시사항 축산 13-0703-06)
- 중앙역학조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역학조사보고서 완료(6월)

④ 국내 AI 종식상황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공식통보

- 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천안)의 방역조치(살처분) 종료(3월17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6.17)에 OIE에 공식통보
 - OIE 규정에 따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선

【피해농가 지원내역(2007년 4월 5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내용	계획	실적	비고
살처분보상금 (살처분농가)	당해 가축 시세의 100% 지급	25,965	18,562	총 460농가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농가)	살처분 후 수의 발생시까지 가계비 지원 (사육규모별, 호당 1,300만원 한도)	1,300	308	1~6차까지 119농가
소득안정자금 (입식제한농가)	이동제한지역에서 병아리를 입식하지 못한 농가(사육규모별, 호당 1,300만원 한도)	200	159	1~5차까지 22농가
가축입식자금 (살처분농가)	가축 입식비용 융자 지원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2,665	2,124	1~4차까지 49농가
경영안정자금 (부화장 등)	영업을 중단한 부화장 및 사료공장 등 -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34,657	24,734	부화장11개소
수매자금 (이동제한지역)	이동제한지역내 닭·오리 수매 및 계란 판매차액 보전	5,131	2,335	닭:430천마리 오리:38천마리 계란:40백만개
합 계		69,918	48,222	

언(보도자료)

-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AI 청정국 지위 회복 사실을 알리고 우리나라산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

03. 종합평가 실시

1 AI 발생 및 방역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 실시

- '03년/06년 AI 발생양상 및 방역추진과정 비교·분석(4월말)
 - 비교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국정브리핑에 국가위기관리 우수대응 사례로 홍보(NSC·국정홍보처 협조)
- AI 발생기간중 부처간 협조체계에 대한 종합평가(5월 초)
 - NSC 등 관계부처와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간 협조체계 등에 대한 평가 실시(NSC 국가위기 관리체계 평가에 대비)
- AI종합평가 결과를 정리, AI대응체계 재정비 방안 수립(5월중)

2 백서 발간

- AI 신고부터 종식까지 방역추진사항 등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제도 개선 및 향후 재발시 참고자료로 활용
 - NSC 등 관계부처와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간 협조체계 등에 대한 평가 실시(NSC 국가위기 관리체계 평가에 대비)
- 백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하여 발간(12월)
(소요예산 30백만원: 축발기금 교육홍보비)

04. AI 대응체계 재정비

1 AI 방역실시요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추진

- 검역원, 시·도 및 유관단체 등에 고시개정 의견제출 요청(2월 1일)
 - ※ 양계협회 등에서 AI 예방접종 허용 등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천안지역 추가 발생으로 검토가 지연
- AI 방역조치 평가회의 결과를 감안하여 AI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작성(5월 말), 관계자 검토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 개최(5월 말)
- 입안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 및 SOP 정비(6월말)

주요개정사항

- 실처분 대상 가축의 범위 및 이동제한 기간 등 재정비
- 장기간 이동제한 기간동안의 가축 생산물에 대한 처리방안 명문화
-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시 방역요령 신설 등

3 NSC 「가축질병」분양 위기관리매뉴얼 개정

- AI 방역과정 중 위기단계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 NSC 매뉴얼 개정안을 NSC에 제출(2월)
- NSC는 '07년 하반기 매뉴얼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

4 AI 발생지역의 입지 및 사육환경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AI 발생기능 지역을 사전 예측하여 집중 방역할 수 있는 예찰 시스템 보완 및 강화방안 검토(2월 12일 장관자시사항)
- 2007년도 농림부 정책연구과제(긴급현안과제)로 제출(4월 2일)
 - 연구기간 및 용역비 : '07.7~12월(6개월간) 30백만원

【추 진 일 정】

주요업무	4월			5월			6월			하반기						
	7	8	9	10	11	12										
■ AI 발생지 방역조치				○												
• 전국적 이동제한 해제				○												
• NSC 경계경보 해제			○													
• 농가지원대책	○	○	○	○	○	○	○	○	○							
■ AI 청정국 지원 회복																
• 전국 사육오리 일제검사		○	○	○	○	○										
• 야생조류 포획검사	○	○	○	○	○	○	○	○	○	○	○	○	○	○	○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									
• 종식상황 OIE 통보							○									
■ 종합평가																
• '03/'06년 비교평가		○														
• 부처간 협조체계 평가			○													
• 향후 방역대책 수립				○												
• 백서발간															○	
■ AI 대응체계 재정비																
• 방역실시요령(개정) 개정					○	○	○	○	○							
•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	○	○	○	○							
• AI 발생지 분석 연구용역									○	○	○	○	○	○	○	